

1. 제정 이유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 예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약력 등을 적은 서류와 정관 및 재산목록 등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내용이 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안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정관 변경 사유서 및 개정될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신고 절차(안 제10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 그 청산인은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

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

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닐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

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대표자 성 명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주관부서	담당자
		소재지	전화번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제황용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관	7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영칭	전화번호		
	소재지			
	법인 허가일	법인 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면접」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장관 귀하

1. 장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할 장란(신·구주무대대표를 장부할·다) 1부 3. 장란 변경과 관련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장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기본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접수 기 인 기 인
---	------------------------

처 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제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주무관 귀하

210mm x 297mm 일일양지 60g/㎡ (제44호종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계수번호	계수명	처리일	처리기간
청신인	성명	생년월일 (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신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신인 대표권과 제한 내용(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음)(다)			
「민법」 제86조제1항 및 「기회예산서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장관 1부 4. 시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칙의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할 때에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호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차 리 찰 자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일		서류 확인 및 검토	→
		회 리 기 관 주 무 관 장	결 제

210mm x 297mm(매상지 80g/㎡ 또는 중량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종질지 80g/㎡]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주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창설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류 및 수량			
처분재산	금액		
	처분방법		
처분서류			

「임대」 제80조제2항 및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 여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관 귀하

1. 해산 당시의 장관 1부(해산신고 시의 장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 우에만 제출함-다)	주수로 있음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제 → 결재 통지

신청인 접수 서류 확인 및 검토 결 제 결재 통지

처 리 기 간 : 주 무 관 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